

#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4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는 2015. 1. 1.부터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, 2019. 7. 1.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2. 6. 30.자로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, 2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
- 다. 현 위탁법인이 가정 밖(위기) 청소년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살려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4. 6. 30.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
- 현 위탁법인(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)은 1989년 문화체육부에 설립·등록된 청소년 단체로 가정 밖(위기)청소년의 상담·선도·수련활동 및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에 기여하고 있음
-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외에 청소년 심리상담, 긴급구조 등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, 청소년들의 마음 휴식 및 지혜 수련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,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(위기) 청소년 보호사업
- 위기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교육문화사업
-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 기관·단체 연계 활동 지원
-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
-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(여) 시설물·장비 등 유지관리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
- 시설규모 : (대지) 241.56㎡, (연면적) 483.12㎡
- 주요시설 :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년(2022. 7. 1 ~ 2024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774백만원('22년)
- 산출근거
  - 인건비 364백만원, 운영비 111백만원, 사업비 29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# ○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황미연 (☎ 2133-4128)